

## 무주택확인서

본인은 [ ]주택청약종합저축·[ ]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세기간(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함) 또는 저축의 가입 당시(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함)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<sup>1)</sup>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함을 확약하며,

이 확인서를 제출한 날 이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등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(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함)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7조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았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 . . .

예금주(본인): (인)

위 내용을 확약하고 자필서명(날인)하여 본인의 \_\_\_\_\_(가족관계 기재)인 \_\_\_\_\_(성명 기재)을 통해 제출합니다.

예금주(본인): \_\_\_\_\_ (인)

위 사실을 확인합니다.

대리(수임)인: \_\_\_\_\_ (인)

1) 본인, 배우자, 같은 주소·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·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.